의안번호	제 257 호
의 결	2011년 월 일
연 월 일	(제305회)

충청북도의정회 설치 및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의회운영위원장
제출연월일	2011년 11월 30일

# 충청북도의정회 설치 및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 257 제출연월일: 2011년 11월 30일

제 출 자: 의회운영위원장

### 1. 제안이유

- 「충청북도의정회 설치 및 육성조례」중 제4조 보조금 지급 규정이 「지방재정법」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위배되어,
-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정 권고에 따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,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충청북도지사는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도록 하되, 「충청북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」에 의한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함(안 4조)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(안 제1조 ~ 제6조)
- 3. 개정조례안 : 별첨
- 4. 신구조문 대비표 : 별첨
- 5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 : 별첨

○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○ 규제관련사항 : 해당없음

○ 입법예고 여부 : 해당없음

## 충청북도의정회 설치 및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의정회 설치 및 육성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- 제2조 중 제목 "구성 및"을 "구성과"로 하고, 제1항 중 "전임의원 및"을 "전임의원과"로 한다.
- 제3조 중 "각 호의"를 "각 호 모두의"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"개선과제 및"을 "개선과제와"로, 같은 조 제3호 중 "연구 및"을 "연구와"로, 같은 조 제4호 중 "기타 위 각 호에"를 "그 밖의 위 각 호 모두에"로 한다.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- 제4조(보조금의 지원) 충청북도지사는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 단, 「충청북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」에 의 한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.
- 제5조 중 "조례 및"을 "조례와"로, "범위 안에서"를 "범위에서"로 한다.
- 제6조 중 "법령 및「충청북도보조금관리조례」"를 " 법령과「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」"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 <u>구성 및</u> 설립운영) ① 전임의원 및	제2조( <u>구성과</u> 설립운영) ① 전임의원과
제3조(사업)	제3조(사업)
제4조(보조금의 지원) ① 충청북도는 의정회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 할 수 있다.	제4조(보조금의 지원) 충청북도지사는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 단, 「충청북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」에 의한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.
제5조(운영규정) <u>조례 및</u> 범위 안에서	제5조(운영규정) <u>조례와</u> 범위에서
제6조(준용) 법령 및 「충청북도보조금관리조례」 	제6조(준용)

## 관계법령 발췌

### □ 지방재정법

- 제17조 (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·보조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있다.
  - 1.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
  - 2.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
  - 3.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
  - 4.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방자 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  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 □ 지방재정법 시행령

- 제29조 (공공기관의 범위 등) ①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권장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진 기관으로 한다.
  - ② 법 제17조제1항에서 "그 밖의 공금의 지출"이라 함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를 제외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등 모든 재정지출을 말한다.
  - ③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"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"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.
  - ④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의 정산과 사후평가 등 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⑤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,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### □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

- 제4조(보조대상) 충청북도지사(이하 "도지사"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.
  - 1.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
  - 2.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
  - 3. 도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## □「충청북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」
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 - 1. "사회단체"는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과계 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.
  - 2. "사회단체보조금"은 당해연도 세출예산 통계목에 단체보조금으로 계상된 경비를 말한다.
- 제3조(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) 사회단체보조금의 운영·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.
- 제4조(지원대상) 충청북도지사(이하"도지사"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
  - 1.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
  - 2. 충청북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
- 제5조(지원범위)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법령 및 조례에 운영비 지원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